#### 행 정 법

###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및 그에 따른 쟁송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 의하여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 ②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③ 행정재산을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수 익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행위는 사법상 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 ④ 각종 사회보험, 연금관련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청구권 등은 공권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의해 바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⑤ 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 의하여 국가기관이 특정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 사법관계이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부령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
- ②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 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③ 제재적 처분기준의 형식이 부령으로 정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 령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 ④ 법원에 의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 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행정입법은 물론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서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을 인정한다.

#### 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정소송법대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 ③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취소소송의 소송 물은 당해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이다.
- ④ 민중소송은 특별히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제기하는 무효확인소송은 기관소송이다.

#### 4.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파례에 의학)

- ①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 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④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 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 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청구권적 성질을 가진다.

### 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학)

- ① 이의신청은 그것이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띠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
- ② 이의신청이 □ 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의 민원 이의신청과 같이 별도의 행정심판절차가 존재하고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 ③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제도를 두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명시적인 규 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것이 실제로 행정심판의 실체를 가지더라도 행정심판으로 다룰 수 없다.
- ⑤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 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의 실질이 이의신청일지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룬다.

#### 6.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 이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민 원조정위원회의 절차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재 량행위이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처분이 기속행위이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법한 행위이다.
- ②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 서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지만 그 산 출근거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산출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기하였다면 이유제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 ③ 예산의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 은 위법하게 된다.
- ④ 난민인정·귀화 등과 같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⑤ 사전통지와 청문 등의 주요절차를 위반하면 위법이 되나 의견 제출절차, 타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위반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 는 것은 아니다.

#### 7.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_ < 보 기 > -

- 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며, 고충심사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지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C.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리.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에 따른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 □. 국가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도 □체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에만 당연퇴직된다.
- ① 7. ∟
- ② ¬, ≥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7, ⊏, □

#### 8.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가해공무원 어느 쪽이든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 ②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재량권의 행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의 결함 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에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직무수행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甲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乙에게 위임하였고, 수임인 乙은 등록서류를 위조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甲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관할 행정청 A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공장등록임을 이유로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① 관할 행정청 A가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 가 있어야 하다
- ② 甲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 A는 [행정절차법[장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관할 행정청 A는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면서 甲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甲에 대한 공장등록을 취소하면 공장등록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장등록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 ⑤ 甲의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할 행정청 A도 그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없다.

###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더라도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 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화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해제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사유이다.
- ③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 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 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된다.
- ④ 선행 사업인정과 후행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 ⑤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비록 체납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하여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더라도 그 조세채 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1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써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 생시키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②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이라도 그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이다.
- ③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져도 법령에 따라 회복등록이 가능하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므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거부를 당하 였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⑤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지만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대상탈락자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이다.

### 12.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의 일반사용의 경우 도로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도로의 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②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 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 권이 아니다
- ③ 하천점용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 양도 할 수 있음이 위칙이다.
- ④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묵시적 공용폐지가 된 것으로 본다.
- ⑤ 도로의 특별사용은 배타적 사용이므로 일반사용과 병행하여 이 루어질 수는 없다.

#### 13. 행정행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인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② '면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법적성격은 인가에 해당한다.
- ③ 正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 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⑤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은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

####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적용되다.
-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무효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15. 현행「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 가 있으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③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의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대법 원에,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16. 행정처분에 의한 제재를 받을 사유가 있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이미 행정처분에 의해 제재를 받은 자가 그 제재나 제재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품위생법□제78조나 □먹는물관리법□제49조에서와 같이 개 별법상 명문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규정하지 않는 한 양수인 에게 양도인의 행위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다.
- ② 대법원은 명문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법적책임을 부인하지만 대인적 처분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양수인 에게 책임이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③ 대법원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양도인에게 발생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과징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④ 대법원은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책임의 승계는 인정하지만 법 적 책임을 부과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제재사유의 승계는 현재 까지 부정하고 있다.
- ⑤ □시품위생법□제78조나 □먹는물관리법□제49조는 명문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책임의 승계를 부인하고 있다.

### 1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r />
ー<<<br />
リ>ー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CA품위생법C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①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하여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② 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 권도 갖고 있다.
- ③ 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 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를 갖는다.
- ⑤ 甲이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 구청장은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 설립과 동법상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보충 해위로서 강화상 인가이다.
- ②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는 설권처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지 며 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 청의 행위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 ④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다투고자 하면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 ⑤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19.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은 권한배분질서에 위반된 권한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 ② 위임의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 등의 일반규정만을 근거로 권한의 위임을 할 수 있다.
- ③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하여 야 하다
- ④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불과하여 원행정청의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 ⑤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지면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 한다

#### 20.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미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이에 대해 재판하고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C질서위반행위규제법C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 위자에게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법□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이 있 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법□제1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그리고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실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된다.
- ⑤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C실서위반행위규제법C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21.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 ② 건설부장관이 구 C주택건설촉진법C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구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픽용는 없다
- ③ 구 □도시계획법□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 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 ⑤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 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 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이다.

### 2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그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행정심 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현행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 대하여서는 간접강 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 23.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그.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 송은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다.「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제2항의 규정상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2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 근. 조세심판에서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 ① 7 ② L ③ 7, L ④ L, E ⑤ 7, L, Z

# 24. 甲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취소판결에는 기판력은 발생하지만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취소판결을 통해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국가배상법]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 ③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법령의 개폐 및 사실상태의 변동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다.
- ④ 甲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은 후 취소판결 이전에 영업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하더라도 다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25.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파례에 의함)

- ①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간 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 ② 기속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물론 기각판결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 ③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 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자효행정처분에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취소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 당해 처분청은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主文)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